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22

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 전에는 「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 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	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
① ~ ⑪ (생 략)	① ~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
	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	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
	<u>아니한다.</u>